

이동통신서비스 도매제공 대가 산정기준

가. 도매제공대가 산정 일반기준

- (원칙) 도매제공대가는 소매요금에서 회피가능비용을 차감하여 산정(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4항)
 - 구체적으로 개별서비스(음성, 데이터, 단문메세지)의 소매요금에 할인율(회피가능비용이 총 소매요금에서 차지하는 비율)을 곱하여 도매제공대가를 산정(도매제공 고시 제24조제2항)
 - ※ 분당도매대가 = 분당소매요금 - {분당소매요금×(회피가능비용 ÷ 총 소매요금)}
- (소매요금) 기간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에 대해 지급한 금액(도매제공 고시 제2조 제3호)으로, 이용자가 의무사업자에게 실제 지불한 요금을 소매요금으로 간주
 - 분당(MB당, 건당) 소매요금은 음성통화서비스, 단문메세지서비스, 데이터통화서비스별 총 소매요금을 각 서비스의 이용량으로 나누어 산정(도매제공 고시 제24조제3항)
- (회피가능비용) 도매서비스의무제공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때 회피할 수 있는 관련 비용으로, 설비 보유 및 기능 수행 여부에 따라 회피할 수 있는 영업비용을 발신통화량으로 나누어 산정(도매제공 고시 제25조제1항)

- 단, 현행 회계분리 체계 상 회피가능비용을 음성통화서비스, 단문메세지서비스, 데이터통화서비스로 구분하기 어려우므로, 각 서비스별 회피가능비용은 각 서비스 별 소매요금이 전체 소매요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전체 회피가능비용에 곱하여 산정(도매제공고시 제25조제6항)
- o (도매제공대가 산정유형) 재판매 사업자 유형별로 설비보유 및 기능수행 여부에 따라 회피가능비용을 산정하여 유형별 할인율이 산정됨

① 단순재판매사업자 : 판매영업 및 고객서비스 활동 수행

② HLR보유재판매사업자 : 판매영업 및 고객서비스 활동 수행 + HLR 설비 보유

※ HLR(Home Location Register) : 가입자 위치 인식장치

③ 교환기보유재판매사업자 : 판매영업 및 고객서비스 활동 수행 + HLR 설비 보유 + 교환기 및 접속점 보유

o (도매제공대가 산정 기초자료)

① 영업보고서 : 별지 제4호(영업수익), 제5호(영업비용), 제14호(감가상각비)

② Top-Down LRIC 모형의 접속원가계산규정에 의한 세기능별 장부가액, 취득가액, 감가상각비, 운영비용으로 세부기능별 영업비용의 배부기준으로 사용

③ 시산표 (기타영업수익 중 연체료 수익)

④ 세부서비스별 이용량 (음성통화량, SMS 건수, 데이터트래픽(MB))

나. 소매요금 세부 산정기준

분당(MB당, 건당) 소매요금은 음성통화서비스, 단문메세지서비스, 데이터통화서비스 별 총 소매요금을 각 서비스의 이용량으로 나누어 산정

□ 서비스 별 총 소매요금

○ 소매요금은 영업수익 중 요금수익, 자가소비사업용수익 및 연체료 수익으로 구성

○ 세부서비스별 소매요금의 산정

1) 음성, SMS, 데이터서비스 직접 금액과 공통 금액의 구분

- 직접 수익

- 음성 : 정액요금수익, 통화료수익
- SMS : 부가수익 중 단문메세지수익
- 데이터 : 부가수익 중 데이터통화료수익

- 공통수익 : 가입비수익, 기본료수익, 자가소비사업용수익, 연체료수익

2) 차감항목 반영 : 도매제공의무서비스가 아닌 영상통화수익, MMS 수익은 차감

3) 공통수익은 세부서비스별로 구분이 곤란하므로 세부서비스의 직접 요금수익 금액 비중에 따라 배부

□ 서비스 별 이용량

○ 음성, SMS, 데이터서비스별로 발신통화량, 건수, 트래픽(MB)을 이용량으로 산정

o 세부서비스별 이용량 산정

1) 음성통화량

- 발신통화량과 망내통화량을 단순 합산하되, 다음의 항목을 차감하여 산정
- 국제발신통화량 및 080발신통화량, 망내 발신(단축) 통화량, 영상 통화 발신 통화량, MVNO 발신 통화량

2) 단문메세지

- 발신 건수와 망내 건수를 단순 합산하되, 단문메세지서비스 소매요금 산정체계와의 균형 등을 위해 다음의 항목을 차감하여 산정
- 국제발신건수, MMS 발신건수, MVNO 발신건수

3) 데이터

- 3G망을 이용한 데이터 총량을 MB로 환산하여 적용하되, 다음의 항목을 차감하여 산정
- MVNO 데이터트래픽

다. 회피가능비용 세부 산정기준

현행 회계분리 체계 상 회피가능비용을 음성통화서비스, 단문메세지서비스, 데이터통화서비스로 구분하기 어려우므로, 각 서비스별 회피가능비용은 각 서비스 별 소매요금이 전체 소매요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전체 회피가능비용에 곱하여 산정

□ 회피가능비용의 식별 및 산정

- o 회피가능비용은 역무별 영업비용 중 ①판매영업기능 비용, ②기업

이미지 광고기능 비용, ③대손상각비 및 ④기타 영업비용 항목 중 ①~③ 관련 비용임(도매제공 고시 제25조제1항 각호)

- 또한, MVNO가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해당 기능 수행 비용(기타 영업비용 항목 중 관련 비용 포함)이 회피가능비용에 포함될 수 있음(도매제공 고시 제25조제2항)

< MVNO 유형별 회피가능비용 분류 >

- 단순 재판매사업 : 판매영업비용(광고선전비, 판매촉진비, 단말기 보조금) 및 고객서비스비용(가입자관리, 멤버십, 청구수납)
- HLR(가입자위치인식장치) 보유재판매사업 : 판매영업 등 비용 및 HLR 비용
- 교환기 및 접속점 보유재판매사업 : 판매영업 등 비용, HLR 비용 및 교환기 비용, 교환국 간 전송·선로비용

- 회피가능비용 산정의 기초자료는 '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'에 의한 기능별/역무별 회계분리 원가임
- 이를 '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' 제27조에 규정된 '접속 원가계산규정'에 따라 세기능별로 회계분리하여 MVNO 유형별 회피가능비용을 산정(도매제공 고시 제25조제3항)

□ 서비스 별 소매요금

- 소매요금과 회피가능비용 간 수익/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
- 정보이용료 수익을 차감하고, 이에 대응하는 비용인 정보제공부대 경비 및 정보제공 수수료를 회피가능비용에서 차감
- 기타 부가서비스 수익, 영상통화 수익 및 MMS서비스 수익은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소매요금에 포함